

# 성매매방지법 시행 후의 문제점과 대안



글: 배임숙일 (사)인천여성회전화 강강술래 소장

## ■ 성매매방지법 시행 후의 현 상황

지난 9월23일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 과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법' 이 시행되면서 우리 사회에는 '성매매' 를 둘러싼 온갖 논란으로 뜨겁게 달아올랐다가 이내 예전처럼 돌아간 듯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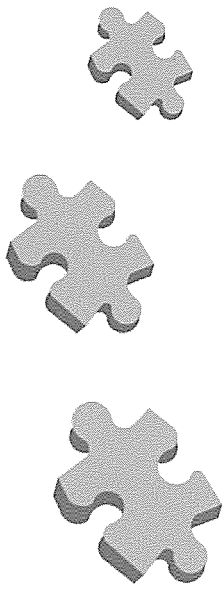
여성들의 인권을 유린하면서 돈을 쉽게 벌어난 성매매업 업주들이 '자신들의 생존권' 을 위해 성매매여성들의 시위를 조직했으며, 범법자가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까지 하였다. 또한 성매매방지법이 남성들의 '통제할 수 없는 성욕' 을 해결하기 위한 행복추구권을 막고 있다는 진정서도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출되기도 하였다.

그렇게 웃지도 못할 상황이 펼쳐졌으며, 현재까지 곳곳에서 성매매피해상담소활동가들이 밤낮을 가리지 않고 구조 활동 및 여성부 지원사업을 펼치고 있다.

그러다가, 2005년 3월27일 낮 12시36분께 서울 성북구 하월곡1동 성매매 업소 밀집지역인 이른바 '미아리 텍사스' 4층짜리 건물에서 난 불로 여성 5명이 숨졌다. 4명은 건물을 빠져나오지 못한 채 3층 계단과 4층 방에서 숨졌고, 1명은 가까스로 구출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오후 4시10분께 눈을 감았다.

이쯤 되니 이 법의 제정에 앞장섰던 여성부로서는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도 무지 알 수가 없을 지경이다.

2년 전에도 성매매를 둘러싼 한 사건이 우리 사회의 뜨거운 이슈가 됐던 적이 있다. 그 당시의 언론보도 몇 개만 들어보면, "정부는 국가인권위원회와 여성부를 만들었다고 자랑만 할 게 아니라 이번 참사를 계기로 음식에서 무시되고 있는 약자들의 인권보호에 더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정부도... 이 기회에 전국에 산



제한 윤락가를 일제히 재정비하는 과감하고 혁신적인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고 보도되었다.

2002년 1월 전북 군산시 개복동 유흥업소에서 성매매를 강요받던 14명의 여성들이 감금된 상태로 잠을 자다 불이 나 불과 15분 만에 죽음을 당한 비극적인 사건이 발생했다. 이 화재로 성매매여성들의 인권유린 상황이 다시 한 번 백일하에 드러났고 이를 기회로 이런 상황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여론이 높아졌던 것이다.

2002년 12월의 형사정책연구원의 연구결과는 또 한 번 우리를 놀라게 했다. 우리나라 성매매의 연간 경제규모가 24조원, 성매매에 종사하는 여성이 33만 명으로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성산업의 비중이 농림어업과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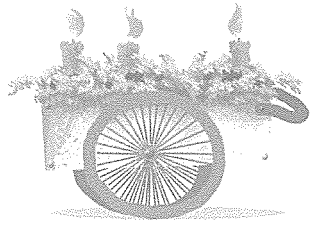
이번 성매매방지법은 이러한 배경에서 탄생된 것이다. 성매매여성들의 인권유린과 이를 가능하게 하는 만연된 성산업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법을 만든 것이다.

따라서 이 법의 목적은 첫째, 여성들의 인신을 매매하고 폭력이나 강압을 통해 성매매를 요구하는 업주와 성구매자를 처벌하고, 둘째, 윤락녀의 개념으로 방치되고 소외되었던 성매매여성들의 인권을 적극 보호하고 이들의 자립을 지원하는 것이다.

지원체계라 함은 시설에 입소를 원하지 않는 여성에게도 긴급생계비와 의료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자립을 위한 직업훈련기회를 제공하기로 했다.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성매매방지법은 정말 획기적인 것이라고 할 만하다. 얼마 전 방한한 미국 국무성의 인신매매담당대사도 우리 정부의 정책을 “매우 주목할 만한 것(Remarkable)”으로 스웨덴 모델과 더불어 가장 선진적인 모델이라고 높이 평가한 바 있다. 성매매방지법은 개인의 성적 문제를 국가가 관리하거나 통제하기 위한 법이 아니다. 여성의 인권유린을 바탕으로 생겨난 성산업을 구조조정하고 선진인권사회를 앞당기기 위해 만들어진 법이다.





그동안 여성단체에서 주장해 왔던 것들에 대한 대책이 마련될 수 있는 시점이 된 것 같다. 3월30일 여성부장관은 기자회견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을 밝혔다.

우선 관계부처의 협조를 얻어 집결지에 대한 집중단속을 1년 내내 적극적으로 펼치고, 성매매업소 거리 폐쇄를 제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성매매업소 집결지 단계적 폐쇄 및 정비에 관한 법률'의 제정을 추진하기 위해 각 지방자치단체에 성매매업소 집결지를 폐쇄, 재개발하도록 하는 의무를 부과하고 재개발을 막는 각종 법적 제한 규정을 풀어주고 비용을 국가가 지원하는 방안이라고 하였다.

또한, 건물 용도를 성매매업소로 사용하는 것은 위법이므로 업소를 철거할 때까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방침 등에 대해서도 협의 중이며, 하월곡동 화재사건은 여성과 자원활동가를 포함한 특별수사팀을 꾸려 재수사를 하고, 집결지 실태조사를 7월12월에 실시함과 아울러 긴급생계비 지원을 6개월에서 1년으로 늘리고 금액 또한 2배로 높일 계획이며, 여섯째는 성매매여성 자활을 위한 센터도 내년 중으로 50곳으로 대폭 확충하기로 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거대책 마련을 위해서는 공공임대 지원사업으로 임대아파트 50가구를 지원할 예정이라고 여성부장관은 밝혔다.


### ■ 사회복지차원의 접근 필요성

- 피해여성에 대한 사회화 프로그램 실시

#### 사회적인 안정망 구축, 개인별·체계적·지속적 지원체계 마련

사회복지제도가 남녀 역할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또한 남녀 역할 관계를 어떻게 형성하게 될지는 실행한 후에 정착화 하는 것이다. 모든 인간이 원하는 사회적 차원의 논의를 통한 합의된 사회복지제도의 발전 방향을 함께 생각해 보아야 할 시기라고 생각한다. 이에 사회복지적 차원에서 접근 할 필요성이 있는데, 우선, 피해여성들의 폐쇄적인 생활권에서 위축되어 있던 마음을 풀어내고, 여성주의 시각으로 자신의 입장을 해석할 수 있도록 사회적 구조를 이해할 수 있게 돕기 위한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예를 들면 공연예술치료, 미술치료, 웃음세라피(Therapy), 욕세라피, 분노표출, 의사소통방법법 등 몸에 대한 부정적인 사고를 이겨낼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접하게 하고, 사회화에 접근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해야 한다.

또한, 소외되어 있던 여성들에게 사회적인 지지체계를 통해 안정성을 확보해 주고, 성문화에 전면적인 의식개혁운동을 펼쳐 남성들의 인식을 전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개인의 생애사적인 접근을 통해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한데, 이를 위해 단계적으로 개인에게 가능한 것을 제공하여 독립을 위한 지속적인 지원체계를 확립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참조 : 여성부자료

사진제공 : 한국여성의전화연합

## ■ 성매매방지법의 시행 후의 효과성



### 1) 성매매방지법 효과는?

성매매가 관행적으로 허용됐는데 이제는 불법행위라는 것을 인식하게 됐다. 성매매 여성의 인권도 사회적 문제로 부상했으며 성문화 자체가 바뀌어야 모든 게 바뀐다는 사회적여론이 형성되었다. 성매매를 사회적으로 허용하는 가부장적인 문화 속에서 남성들 또한 사회적으로 학습된 가해자임을 인식하게 되었다.

### 2) 성매매방지법이 경제에 악영향을 미쳤다는 주장은?

성 산업은 부패하고 상스러운 접대문화 때문에 발생한 것이다. 우리나라 성 산업 규모로 추정된 24조 원을 들여다보면 생산적인 게 아니다. 6만~7만원 내고 집결지 갈 것을 가족을 위해, 아이를 위해 쓰면 되는 것이다. 그러나 아주 단기적으로는 섹스관광을 기반으로 했던 부분이 있다면 단기적 타격은 받을 것이다. 새로운 관광문화를 개발해야 한다.

### 3) 성매매업주들의 이른바 생존권 주장에 대해?

성매매업주들은 생존권 운운할 필요가 없는 사람들이다. 업주들은 성매매가 황금알을 낳는 거위라 했는데 한 명의 여성이 1년에 6천만원에서 1억 원을 벌어준다고 한다. 사람을 가둬놓고 지금까지 불법행위 위해서 이득을 보지 않았다.

### 4) 성매매업소 여성의 지원시설 입소현황과 일자리 창출 방안은?

지난 19일 현재 38개 지원시설에 506명이 입소해 정원 757명의 60%를 기록했다. 이 가운데 9개소는 정원을 초과했다. 상담, 법률, 의료 지원을 비입소자에게까지 제공하도록 상담소와 시설 개량 운영을 추진 중이다. 성매매 여성들이 용기를 내서 나왔으면 좋겠다. 기본적으로 여성의 연령이나 특성, 의지 등을 고려해 공공근로나 사회적 일자리와 함께 적합한 직종을 찾아 취업 알선방안을 고민하고 있다.

### 5) 공장제에 대한 견해는?

우리나라의 성매매 여성의 규모가 최소 33만 명인데 이들을 대상으로 공장제를 운영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며, 공장이 생겨나면 반드시 사창이 함께 창궐하는 역사적 교훈을 생각해볼 때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 우리 사회에 만연한 불법적 인신매매와 감금 등 인권유린적 실태를 볼 때 공장제라는 이름으로 약자인 여성과 소수에 대한 인권유린이 다수의 행복을 보장한다는 논리에 찬성할 수 없다.

### 6) 부부강간죄 도입에 대한 견해는?

미국 등 부부강간죄 개념을 도입한 나라가 꽤 많다. 도입할 때가 됐다고 생각한다. 부부간의 성폭력이 대개 이렇듯 따로 일어나는 게 아니다. 다른 가정폭력이 동반되기 때문에 여성의 성적 자기 결정권이 부부 사이에서도 존중되어야 한다. 폭력적 성행위는 안된다고 본다. 열린우리당 홍미영 의원이 그런 (가정폭력방지법 개정)방안을 추진하고 있고, 저희로서는 그렇게 되면 좋겠다고 생각한다.

(-전 지은희 여성부장관 인터뷰)